

안전문화운동 전개방안

박연홍 /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훈련국장
안전문화추진본부 사무국장

I. 안전문화의 정의

『안전문화』란 태도·관행·의식이 체질화되어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국민생활속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II. 필요성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열었고, '96년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상품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고는 곳곳에 산재한 잠재위험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가장 존엄한 권리인 생명마저 위협을 느끼는 등 “세계화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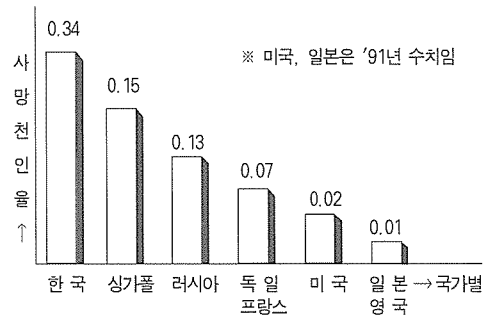
따라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생활화, 체질화를 위해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학교생활에 이르기까지 안전교육 환경조성과 구체적 실천기법을 보급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생활을 통한 안전규칙 준수 등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III. 우리의 안전실태

1. 주요국가의 산업재해현황 비교

가. '92 전산업 사망천인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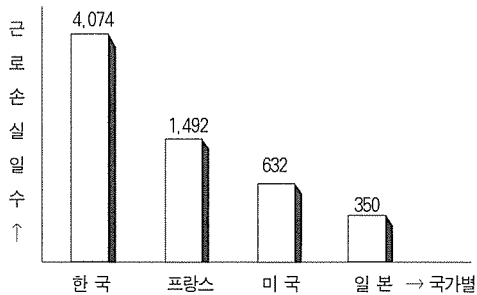


○ 사망천인율은 '92 ILO 국제노동통계연감에 수록된 37개국 중 체코, 인도네시아, 터키에 이어 4번째로 높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10년간 98,292명으로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가 주요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약 10배가 넘는다.

나. 재해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비교('91년 기준)

안전문화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4,074일로서 프랑스(1,492일)의 2.7배, 미국(632일)의 6.4배, 일본(350일)의 11.6배

2. 안전교육의 국내·외 실태 비교

- 우리나라는 조기안전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이 없는 등 기본적 요소가 미흡
 - 스웨덴,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유아때 부터 안전하게 걷기, 달리기, 놀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기초적 생활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 ※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학교내에 별도의 안전 위원회를 두고 전담교사에 의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우리나라는 중학교 교과과정의 사회·기술과목에 안전관련 내용이 단편적 취급
 - 독일에 비해 취급되는 양도 13% 수준에 불과
 - ※ 학교공제회(15개시·도)의 통계에 의하면 '94년도 학교내 안전사고는 총 8,481건이 발생, 26억 7천만원의 공제회비 지출

3. 안전관련 사법처리 기준 등 비교

- 지난 10년간('83-'9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6,989명 중 대부분 약식 재판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

- 정식재판을 받은 위반사범은 137명(실형 3명, 벌금 91명, 집행유예 43명)으로 비교적 경미하게 처리

- 미국, 독일 등에서는 안전관련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벌과금 부과
 - ※ 미국은 직업안전보건법을 개정('90. 11. 5)하여 벌과금을 7배로 상향조정
 - 고의적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 구속과 함께 최고 250,000불(약 2억원), 법인은 500,000불까지 부과
 - 고의적 위반시 『위반건수당 최고 70,000불』, 누계 수백만불 부과
 - ※ 직업안전보건법 개정이전의 '90년 벌과금 총액은 약 10억불

4.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인식도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의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 전화 설문조사에 의해 건축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 105명을 조사 대상으로 함

가. 부실공사의 주된 원인

- 대형사고의 주된 원인은 관계자의 빨리빨리, 적당주의, 책임감 부족이 58.1%
 - ※ 우리 국민의 빨리빨리 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선호출기 보급
 - 천인율은 99.7('95. 7)이며, '92. 1 기준 미국 46.1, 일본 41.8, 프랑스 5.0임

나. 안전수칙 위반 경험과 이유

- 안전수칙 무시경험은 자주 있다(5.3%), 가끔 있다(45.9%), 거의 없다(48.8%)로 국민의 반수 이상(51.2%)이 안전수칙 무시경

험

- 이유는 무의식적 습관(49.9%), 바쁘고 급해서(28.7%), 사고가 안날 것 같아(17.2%)로 집계

다.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

- 사고예방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시공자, 기술자, 근로자 의식개혁(31.4%), 감리·감독철저(16.2%), 부실공사의 처벌강화(9.5%) 순으로 『의식개혁』이 시급

IV. 해결해야 될 문제들

- 대형사고 발생의 잠재위험 상존
 - 무리한 시공 등에 의해 양산된 10년 이상 노후시설물의 증가
 - 생활주변 기계·설비의 고압화·고충화에 따른 잠재위험 증대
- 적당주의 등 안전의식의 전반적인 부재
 -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뒷전으로 밀리는 안전불감증이 만연
 -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는 조기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체제 미흡
 - 언론, 방송 등 대중매체의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계몽 및 홍보 부족
- 준법풍토 결여 및 법적 제재 미흡
 - 안전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약하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 팽배
 - 법규, 규정위반 등을 고발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정신 부재

VI.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기본방향

안전문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제도개선, 법적 제재 조치 등이 상호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가. 학교·가정·직장생활 안전문화 형성

- (1) 학교안전교육의 체계적 실시
 - (가) 학교안전교육의 기본방향
 - 1) 안전문화의 유지발전을 위한 학교교육의 사회적 기능 제고
 - 교육이 문화적, 사회적 전통을 전달시키고 아울러 사회를 존속 유지하게 하는 기능 제고(보수적 기능)
 - 기존의 안전문화를 터득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가치추구의 정신을 촉진하는 능력을 수련해서 새로운 안전문화를 창조하게 하는 기능 제고(창조적 기능)
 - 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안전교육체계 확립
 - 가정 및 유치원부터 조기안전교육이 필요
 - 학교교육은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사회, 직장안전교육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3)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안전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학교 : 생활중심, 가정중심의 안전교육
 - 중학교 : 직장 및 사회안전을 중심으로 교육
 - 고등학교 :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안전지식과 기능교육
 - (나) 효과적인 학교안전교육 시행방안
 -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체제의 강화
 - 교육부 및 교육청에 전담조직 또는 안전교육추진위원회(가칭) 설치

안전문화

- 안전학습 자료의 제작, 공급의 체계화 구축
 - 실습 및 체험실습을 위한 안전학습관 설치 운영
- 5)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 조기안전교육을 통하여 성장기에 안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안전의식, 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 (나) 학교안전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개선 방안

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정책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교육부에서 고시한 제6차 교육과정은 1995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에 의해 초·중등학교 교과서가 새롭게 개편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개편되는 새 교과서에 안전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록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급별 교과용 도서편찬 및 심의지침에 이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 2) 국민학교 단계에서는 국민생활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도록 관련 교과에서 사례 및 생활중심으로 안전교육내용이 다루어지도록 한다.
- 3) 중학교 단계에서는 국민학교에서의 기초 위에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안전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예방지식 및 기능을 갖도록 하고 노동 및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형성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련교과 의 내용을 구성한다.
- 4)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능 등이 관련 교과에서 다루어지도록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는 독립된 안전교과목을 신설하여 선택 시행
- 5) 학교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 노동부, 교육연구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인 전문인사로 구성된 “안전교육추진위원회(가칭)”와 같은 자문기구를 교육부에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 자문기구에서는 장·단기 학교 안전교육정책과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안전교육내용 체계화 연구도 수행 (도서편찬 및 심의지침에 관한 내용 포함)
- 6) 교육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지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에는 안전교육 전담장학직을 설치하고, 각급 학교에는 “안전교육 주임”을 두도록 한다.
 - 7) 학교안전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연구·개발하여 제공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수 과정을 확대 개발, 정착시키도록 한다.
- (2) 가정에서의 생활안전자료 보급방안
- (가) 유치원 취학 전 어린이의 조기안전교육 생활화 운동 전개
- TV 교육방송의 유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반영
 - 일반가정에서 부모가 유아와 함께 놀이교육을 할 수 있는 정리정돈, 질서 지키기 등 기초 안전생활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제작 전파
- (나) 가정안전용 비디오 제작·보급

- 가전제품 사용, 어린이 오락기구 사용, 건 강관리상 안전보건 등에 관한 내용으로 비디오 제작
- (다) 가정안전교육을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 내용
 - 아이들과 안전점검하는 요령
 - 전기용품에 대한 감전사고 등 각종 사 고사례 및 안전수칙 준수요령
 - 사고 발생시 신고체계, 방법, 대피요 령 등 충망과
- (라) 반사회피해를 활용한 홍보
 - 일반가정에서 유아에 대한 정리정돈, 질 서지키기와 안전생활교육 병행 유도
 - 가전제품, 오락기구 등 가정에서 발생하 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수칙 요령 등 안 전확보방법의 교육 및 홍보
- (3) 직장 안전교육의 활성화
 - 1) 기업주, 시설주 등 민간분야 최고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의 제도화
 - 각 분야 최고경영자를 위한 안전교육과정 의 상설 운영
 - 2) 공직자에 대한 안전지식 교육을 통한 책임의 식 제고
 - 공직자 연수과정에 안전교육 과목 신설
 - 3) 일반국민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신 함양을 통 한 안전의식 확산
 -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시 안전교육과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여 교육 실시
 - 4) 근로자의 사회배출 전 직업교육을 통한 효과 적인 안전의식 제고
 - 제조업체 예비 기능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의식 제고(직업훈련원 등)
 - 5)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 건설근로자용 교육프로그램의 제작 및 시행

나. 사회여론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여론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며 우리 민 족의 안전문화 의식구조의 재점검을 위한 연구 사업의 전개와 각종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 1) 우리민족의 안전문화 의식구조 재정립 : 우리 민족의 안전문화 의식구조의 특징(장점, 단 점)과 성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개선하여 현대문명에 맞 는 안전문화 정신을 보급
- 2) 안전문화 상징물(심볼마크 및 캐릭터) 현상 공모 :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 문화운동에 참여의욕을 높이고 참신한 아이 디어를 발굴하고, 그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각종 행사 전개시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열기를 사회저변에 정 착시키고 국민안전 의식고취에 기여하고자 했다.
- 3) 안전문화 전시관 설치 : 안전문화 종합전시관 을 시범설치하여 문명의 발달에 따른 안전의 식과 체험적 안전의 필요성을 습득할 수 있 는 공간으로 활용
 - 대전의 과학공원이나 공업단지에서 시범 설치 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 산업안전, 교통, 소방 등 종합적 박물 전 시관으로 설치하여 방문자 교육도 병행하 여 운영
- 4) 『국민안전의식』 조사 실시(1995. 11. 8) : 안 전문화추진본부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안 전문화에 대한 의식실태를 진단·파악하고 자 “월드리서치”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다.

〈요 약〉

-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협요인 수준은 대단히 높다.
 - 전체국민의 90%가 우리 사회에 위협요인이 많은 편 또는 아주 많다고 생각
 - 80%는 안전사고가 자기 본인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
 - 최근 일련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이 부족한 것보다 지켜지지 않는 데서 더 원인을 찾고 있다.
- 응답자 본인들은 위협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거나 대체로 하는 편(69%)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가정이나 사업장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는 않고, 또 사고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도 충분히 인지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낀다.
- 안전규범이나 제도가 사업장 등 사회에 있으면, 소속원들이 대체로 알고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약 60%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안전사고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반반 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 등 감독기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축, 화학 등 위험요소가 있는 직군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시설 실무 담당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및 경영자 등의 안전사고예방 노력을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나름대로의 안전사고예방 노력은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여러가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의 효율성 평가에서 측정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에서 '조기 안전교육의 실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반면 안전제도의 개선 및 시행 등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밝혀졌듯이 안전사고 등이 법이나 제도보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준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직업별로 보면 일반 회사원, 공무원 등은 '종합안전관리기구', '안전감시기구' 등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주부나 자영업 등은 매스컴이나 안전문화캠페인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대조를 이룬다.

다. 국민참여를 통한 안전활동 전개

- 1)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매월 4일(휴일의 경우 5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전국민의 참여하에 각종 시설물 점검 및 홍보활동 전개
 - 매월 안전에 저해되는 사고방식, 관행을 하나씩 고쳐 나간다.
- 2) 『국민안전검사 청원제』 도입·실시
 - 생활주변 위험시설에 대해 국민의 검사요청을 안전문화추진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접수받아 해당 검사기관에서 검사 실시
 - ※ 검사기관, 방법, 절차 등은 관계부처별로의견수렴 결정
- 3) 『안전문화지도자』 선발·교육
 - 관계부처, 단체별 안전문화지도자를 선발하여 산업안전공단 교육원에서 성공사례 등에 대해 교육 실시
- 4) 『안전문화축진대회』 개최
 - 경영계, 노동계 등 민간단체 중심으로 3월중 개최
 - 중앙대회 및 전국 13개지역 본부별로 지역대회 개최(3~4월)

5)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전개

-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주요시간대에 공익방송 고정프로그램 확보
- 주요일간지 등에 안전문화 소개를 위한 선진국 탐방 등 『기획특집』 보도
- 전국 5대 도시 철도역, 주요지하철 환승역 등에 전광판, 와이드칼라, 홍보판 등 시각매체를 통한 홍보
- 안전문화추진 가두캠페인과 글짓기, 미술대회, 웅변대회 등 개최

라.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1) 안전문화추진 중앙집행위원회의 활성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안전문화추진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하여 안전문화운동 전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재해예방 전문단체의 공동참여하에 각 분야의 사업개발 및 역할분담하여 공동 추진
 - 정부 관련 부처간의 공조체제 구성으로 다원적 대응능력 체제 구축
 - 필요시 안전문화추진본부에 안전관련기관 및 단체직원의 파견 근무 지원 요청
- 2)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전개와 전폭적인 예산 지원
- 3) 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수립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만화로 배우는 안전 (2)

강이나 바다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자



- 작업선이나 연락선은 정원 이상 타서는 안 된다.
- 작업을 하기 전에 간만의 시각을 확실하게 알아둔다.
- 기후에 항상 주의하고 악천후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
- 미리 대피하는 장소를 알아둔다.
-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한다.
- 당황하여 배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
- 배 안에서는 한쪽으로 쏠리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허리를 내리고 낮은 자세로 한다.
- 침실로서 허가된 곳 이외에는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다.